

##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함 태 성\*

토양은 우리 인간에게 공기, 물과 함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의 특성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또는 복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토양이 오염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토양생물들과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시키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급성적인 피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토양오염은 대부분의 환경오염처럼 한 번 오염되면 그 개선이 어려우면서도 대기나 수질에 비해 훨씬 더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토양오염지역의 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토양환경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각종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자 발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다시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발표문은 대체적으로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하여 체

---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토양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발표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의 경합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정화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별환경법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인데,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규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양자의 적용범위,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 양자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해석론, 나아가 바람직한 입법론 등에 대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둘째, 최근 동향과 쟁점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응방안문제이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도 오염되어 있는 경우 많아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의 경로는 동일하므로 토양오염은 곧바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자의 연계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각각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게 된다. 따라서 토양과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되거나 단일화가 필요한 부분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정책적인 부분과 입법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셋째, 브라운 필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심각한 브라운 필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비좁은 국토를 매우 밀도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장이 그린필드로 나가기 위한 절차나 과정도 까다로운 편이다. 그리고 현행 관련 법체계의 내용과 주어진 상황으로 보건테, 브라운 필드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브라운 필드 문제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넷째, 발표자의 발표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듣고자 한다. 발표문에서는 최근 토양오염 관련 언론보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한미군기지의 토양오염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오염소송에서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군기지내 토양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평소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있다면 간단히 언급해 주었으면 한다.